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1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01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피 고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7. 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798,063,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9. 2. 12.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다.항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의 지위에서 위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1993. 5. 15.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인수 및 임원 교체 등

1) D은 2016. 11. 11. 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다(이하 '1차 법인 인수'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2016. 11. 15. 그 상호를 현 상호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등기임원을 사내이사 E에서 사내이사 D, F, G으로 교체하였다.

2) H는 2017. 7. 3.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다(이하 '2차 법인 인수'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이 사건 회사는 2019. 2. 13. ○○ ○○○구 I 외 4필지 합계 면적 2,386㎡ 및 그 지상건물(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49,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표준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260,4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1

2) 피고는 2019.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회사가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휴면법인(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10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인수한 지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이므로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9. 이 사건 회사에 관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353,733,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관련 부동산에서 'J'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20. 12. 24.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은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27조 제6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의 설립·설치·전입 시기 등은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피고는 2021. 6. 17. 원고에게 관련 처분에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90,983,120원, 지방교육세 118,196,620원 및 가산세 총 88,883,850원 합계 798,063,5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1

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2021.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결정문은 2022. 10.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2차 법인 인수일인 2017. 7. 3.을 기준으로 그 이전 2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하였으므로, 사업 실적이 없었던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1차 법인 인수일인 2016. 11. 11.을 기준으로 휴면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그 이전 2년의 기간 동안에도 사업 활동을 하였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그 해석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는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1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휴면법인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이하 '종전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 종전 시행령 규정은 2017. 12. 29.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대통령령 제28524호, 2018. 1. 1. 시행,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을 '개정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되었으나,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2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8. 1. 1. 이전에 1차 법인 인수 및 2차 법인 인수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는 종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종전 시행령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수도권 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데, 중과세 범위가 일반 신설법인과 다르고 적용시점이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종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중과제도는 주주가 아닌 법인 자체에 대한 과세임에도 휴면법인 인수관련 과점주주 비율만큼만 중과하게 되어 입법취지(중과세 회피 차단)나 과세체계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1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과점주주 지분 비율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휴면법인 인수 후 지분비율이 변동할 경우 중과적용 시점에 대한 혼선(예를 들어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과점주주 비율이 재차 변동한 이후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취득시점인지 또는 휴면법인 인수 시점인지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휴면법인의 인수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지방세법상 휴면법인 인수시기에 대한 판단에 있어 종전 시행령 규정과 달리 보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문언해석상 혼선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개정 취지에 따르면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역시 '최초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점주주 비율만큼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입법 취지 및 수도권 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는 점, '법인 설립(신설)'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 변동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에서 언급한 '최초 인수시점'은 한 명의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그 과점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중과세 기간의 적용을 받는 도중 과점주주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즉 법인의 설립(휴면법인 인수)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을 하였는데 그 부동산 취득 전에 과점주주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점주주별로 과점주주가 된 때(최초 인수시점)에 해당 법인이 휴면법인이었는지 여부를 각기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변경 후 과점주주'가 법인을 인수할 때를 기준으로는 휴면법인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 전 과점주주'가 법인을 인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1

할 때를 기준으로 휴면법인인 경우에는 '변경 전 과점주주'의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 적용대상인 부동산 취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이 사건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누70577 판결[1] 참조).

2) 이 사건 회사가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처럼 이 사건 회사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 법인 인수 시점과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각기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적어도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대로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도시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위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어떠한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면 급여·임차료 등 필요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위 회사는 2014.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임직원의 급여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는 임차료 비용 2,26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비용이 1차 법인 인수 시점인 2016. 11. 11. 이전에 발생

1) 위 판결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4093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1

한 것인지는 불명확하고(을 제1호증의 2, 4 참조), 같은 이유로 2014 사업연도에 발생하였다고 기재된 매출액(수수료 수입) 265,000,000원이 언제(특히, 2014. 11. 1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그 외에 이 사건 회사의 매출·매입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령 특정 회사의 사업 실적을 반드시 일정한 매출·매입의 존부 내지 규모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1차 법인 인수 이전 2년간(2014. 11. 12. ~ 2016. 11. 11.) 사업준비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매출·매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이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6. 11. 11. 이전에 관련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매매협상, 사업계획서 작성, 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 PF를 위한 금융대출주선계약,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사업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5.경부터 2016. 11.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관련 부동산에 관한 매입·매도의향서, 사업계획서, 건축사무소의 의견서, 금융대출주선계약서, 시공참여의향서 등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그중 매입·매도의향서(갑 제8, 9호증)에는 그 매수인으로 이 사건 회사뿐만 아니라 장래에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G, F이 이미 병기되어 있고, 매입자의 등기명의인도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1차 법인 인수 이전까지는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개발 및 판매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무관한 목적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D은 1차 법인 인수 이전에 미리 이 사건 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관련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업 활동을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1

사건 회사의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

다) 더욱이, D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발생시킨 매출은 주식회사 K와 체결한 2016. 12. 1.자 부동산개발 자문계약(갑 제18호증)에 따른 자문료 420만 원인데, 위 회사는 D이 감사로 재직하던 회사여서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활동으로 인한 매출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9년에서야 비로소 발생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D 측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이미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었던 이 사건 회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법인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이 아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1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1

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⑥ 법 제13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설치·전입 시기 등은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1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부칙 <제28524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면법인 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2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